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미심위 운영경비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8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13.

다.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그 밖의 기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 ---- <u>국고에서</u> ----- -----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삭 제>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삭 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삭 제>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
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회(이하 “방미심위”라 함)를 두면서, 방미심위 운영경비 예산을
국고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방
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26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은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함)을 통
해 지급되어 왔음.

<방발기금을 통한 방미심위 운영경비 지원 현황>

연도	운영경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운영경비 예산 (단위: 백만원)	
	계획액 기준	결산		계획액 기준	결산
2009	24,251	24,251	2018	31,676	31,676
2010	24,719	24,719	2019	33,672	33,377
2011	26,106	26,106	2020	34,667	34,298
2012	26,888	26,888	2021	36,221	35,487
2013	27,515	27,515	2022	36,139	35,835
2014	27,149	27,149	2023	36,824	36,593
2015	28,627	28,627	2024	36,560	36,052
2016	29,153	29,153	2025	33,630	32,724
2017	30,227	30,227	2026	34,751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6.6.)

○ 방미심위의 인건비·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¹⁾ 측면에서 현행법에 따른 방발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²⁾이므로, 방송·통신 심의를 수행하는 방미심위의 운영경비에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미심위 운영경비를 방발기금 대신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방송시장 악화로 방송사업자로부터의 부담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방발기금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방발기금 수입·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방발기금 사업비 지출액(7,367억 6,600만원)에서 방미심위 운영경비 지출(327억 2,4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하며 세부사업 기준 지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³⁾에 해당함.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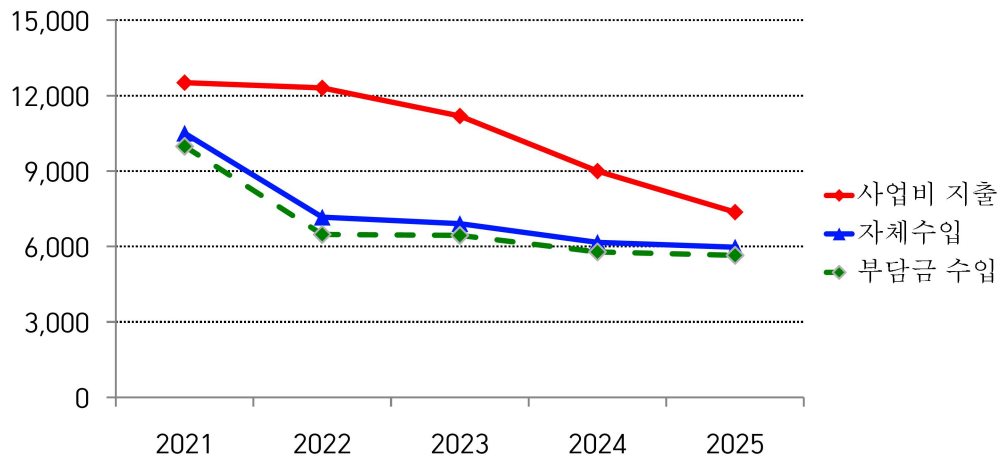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참고로, 2위는 300억 6,400만원의 ‘EBS프로그램 제작지원(3131-301)’이며, 3위는 218억 7,000만원의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3132-308)’임.

<최근 5년간(2021~2025년) 방발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지출	12,518	12,310	11,192	9,000	7,368
자체수입	10,508	7,168	6,910	6,165	5,973
부담금 수입	9,986	6,480	6,443	5,784	5,650



- 기금 지출 효율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방발기금 재원을 본래 목적인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방미심위 운영경비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방발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미심위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국고 또는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근거하여도 기금 대신 국고로 예산을 편성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적으며, 방미심위의 심의 업무는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서 방발기금 용도에 부합함.

- 한편, 기금 설치 목적과 방미심위 직무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중검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방송통신의 공익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공공복리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제26조에서 기금의 용도로서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 및 기금 용도에 부합함.

- 또한, 舊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20여년 간 기금으로 기관 예산을 편성·집행해왔으며, 기금 대신 국고로 한정할 경우 예산의 확보 및 안정성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법정기관의 운영 및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예산당국과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방송협회: 동의) 방발기금 설치 목적인 ‘방송통신 진흥’에

상치되는 규제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금에서 국고로 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성적 기금 지원을 재검토하고, 기금의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편하여야 함.

- 특히, 위원장이 인사청문 및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인 방미심위가 행정규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규제기관에 해당하고, 행정규제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226